

수원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가합11780(본소), 2025가합11781(반소) 판결 [하자보수에
같은하는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의석

피고(반소원고) 1. W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순범, 기훈

피고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노영은

변론종결 2025. 9. 4.

판결선고 2025. 11.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W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099,708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8.부터 2025.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W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W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W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W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W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W종건'이라 한다)는 756,118,541원과 그 중 345,159,3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410,959,2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W종건과 공동하여 345,159,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소 : 원고는 피고 W종건에 22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축·임산물의 식품가공 및 처리업, 소분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 W종건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2. 2. 25. 피고 W종건을 수급인으로 하여 김포시 ▲▲읍 ○○○○ 1759번길 116 부지에 식품공장(이하 '이 사건 식품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억 1,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22. 3. 14.부터 같은 해 8. 1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2. 20.경 피고 W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36억 9,2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공사기간을 같은 해 12.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1월경 이 사건 식품공장 외포장실 바닥의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등 시공상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 W종건에 그 보수를 요청하여, 외포장실 바닥을 철거하고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1. 12. 이 사건 식품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월경 사이에 위 공장 내 바닥 균열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23. 3. 8.경 피고 W종건에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건설품질시험원은 이 사건 식품공장 내 외부 매트 기초와 내부 슬라브 바닥의 시료를 채취하여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의 품질과 강도가 이 사건 식품공장의 설계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사. 한편,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23. 2. 16. 피고 W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110,781,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 W종건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4억 6,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2억 2,97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W종건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W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콘크리트에 이물질 등이 포함되는 등 품질관리 및 시공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식품공장에 콘크리트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건물의 구조상, 안전상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하자의 보수는 철거 후 재시공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 W종건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747,432,250원(철거 후 재시공 비용 기준)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W종건은 원고에게 약정 공사기간인 2022. 12. 31.부터 실제 사용승인을 받은 2023. 1.

12.까지 지연된 12일의 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으로 44,312,400원(= 공사대금 3,692,700,000원 × 지연기간 12일 × 지체상금율 0.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식품공장의 하자로 인하여 2023. 3. 31.까지 이 사건 식품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였다. 피고 W종건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W종건은 원고에게 하자보수 및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확대손해(금융비용 대출이자, 인쇄물 폐기비용, 전기등 관리비, 화재보험료)에 대한 배상으로 194,073,89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감정인 R(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W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식품공장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식품공장에 기능상·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W종건은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나아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6,799,7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표 기재 하자는 모두 미시공 내지 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로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따로 피고 W종건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자 항목	하자보수비
1	사용검사 전 하자	
1-1	1층 바닥 콘크리트 강도 기준 부적합	11,826,420
1-2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미시공	3,626,359
1-3	공장 내 아스팔트 포장 미시공	37,217,204
1-4	차선도색, 자바라 대문 등 부대공사 미시공	6,253,011
1-5	전기차 충전기 미시공	4,647,358
2	사용검사 후 하자	
2-1	건물 내·외부 바닥, 벽체 콘크리트 균열 발생	4,229,356
2-2	콘크리트 강도 및 타설 불량으로 인한 선보수 공사비	209,000,000
	합계	276,799,706

다. 원고의 중대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식품공장의 1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인 점, 설계도면상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 실제 시공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차이가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식품공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층 바닥 콘크리트 강도 및 타설 불량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이를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그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참조).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식품공장의 설계도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은 24MPa가 되어야 함에도, 감정인의 감정결과 실제 시공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평균 15.1MPa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식품공장의 1층 바닥 콘크리트 강도 및 타설 불량 하자가 위 건물의 구조상, 안전상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보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철거한 후 다시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식품공장 1층 바닥 콘크리트 강도 및 타설 불량 하자가 발생한 이후, 원고는 2023. 4. 25.경 주식회사 선한산업에 그 하자 보수를 의뢰하여, 보수비용으로 2억 900만 원을 지불하였고, 2023. 5. 8.부터 같은 달 24.까지 보수 공사를 이미 진행하였다.

나)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에, 이 사건 식품공장 1층 바닥에서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되었으나, 벽체나 천장에는 그와 같은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 이에 대하여 감정인은 바닥이 상층부를 지지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바닥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 미달로 인해 건물 전체의 구조적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감정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원고의 선 보수공사는 적절하게 시행되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식품공장의 1층 바닥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치 미달의 하자로 인하여 해당 부분을 철거한 후 재시공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 감정인은 1층 바닥에 주로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피고 측의 주장대로 온도차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이를 제외하면 균열의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바) 1층 바닥의 균열이 다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식품공장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거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지체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22. 12. 31.까지인데, 원고는 2023. 1. 12.에 이 사건 식품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 W종건이 그 약정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W종건의 공사지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 W종건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준공일은 피고 W종건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약정하였다(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3항 참조).

나) 원고와 피고 W중건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준공예정일을 2022. 8. 15.로 약정하면서, 그 기준일을 '특검 준공검사'일로 약정하였고, 이후 공사기간을 같은해 12. 31.까지로 변경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W중건은 2022. 12. 14.경에 이미 원고 측이 지정한 설계사무소(D)에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식품공장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그에 따라 2022. 12. 21.경 이 사건 식품공장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이 김포시청에 접수되어 같은 달 26. 이 사건 식품공장에 대한 특검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

마) 결국 피고 W중건은 이 사건 공사기간 내인 2022. 12. 31. 이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였고, 그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하여 2022. 12. 26. 특검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마. 확대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3의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 W중건은 2022. 11월경 이 사건 식품공장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된 하자 등을 보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하는 부수적인 손해(보수기간 동안 공장을 전부 또는 일부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직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 보수를 위해 기기 및 자재를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비용을 포함)를 모두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확대손해, 즉 ① 금융비용 대출이자, ② 인쇄물 폐기비용, ③ 전기비 등 관리비용, ④ 화재보험료가 이 사건 식품공장의 하자보수기간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해당기간 동안 원고가 직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 내지 그 하자보수를 위해 기기 및 자재를 운반, 보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식품공장의 하자보수와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이자 등 위 확대손해 비용들의 발생 사이에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인 피고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이와 별도로 하자보수로 인한 공사지연을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의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따로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68220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W종건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276,799,7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그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서울보증보험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사실상 준공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더라도 준공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증보험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032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식품공장의 사용 검사 후 발견된 바닥 등 콘크리트 균열 하자 및 그 선보수비 지급 하자는 이 사건 식품공장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발생한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사용검사 후 하자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포함된다.

가) 원고는 2022. 11월경 이 사건 식품공장 외포장실 바닥의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등 시공상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 W종건에 요청하여 외포장실 바닥을 철거하고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하였다.

나) 피고 W종건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V으로부터 납품받았는데, 위 레미콘이 품질과 강도에 있어 설계상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 W종건은 향후 이 사건 식품공장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된 하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수하거나 이를 보수하는 데에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배상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23. 1. 12. 이 사건 식품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월경 사이에 이 사건 식품공장 내 바닥 균열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같은 해 3월경 한국건설품질시험원에 의뢰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였는데, 그 결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 W종건이 2022. 11월경 확약서를 통해 확인한 사항과 동일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식품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바닥균열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그 이후에 비로소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2023. 2. 16.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은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사건 식품공장의 사용검사 후 하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균열' 뿐이다.

3) 결국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식품공장에 시공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W종건과 피보험자인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W종건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채권의 청구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피고 W종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억 2,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W종건에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9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W종건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W종건의 자동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 2억 2,970만 원, 원고의 수동채권으로 손해배상채권 276,799,708원이 있음은 앞서 보았다.

2) 자동채권인 피고 W건설의 공사대금 채권과 수동채권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준공일인 2023. 1. 12.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3) 피고 W종건의 공사대금 채권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3. 1. 12.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 이로써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47,099,708원(= 276,799,708원 - 229,700,00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상계 결과, 피고 W종건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7,099,708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8. 8.부터 피고 W종건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W종건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W종건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W종건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재원 판사 구나영 판사 제용민